

서비스	구비서류	가구특성 가구특성 입증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동화야 놀자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의사소견서	연령 대비 표준 몸무게 또는 표준 키 미달자로 발달 지연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는 자 ※ 연령대비 평균 체중 및 신장은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참조
	의료기관, 보건소, 학교보건교사의 비만도 확인자료 (키, 몸무게 확인) ※ 해당기관 직인 필요	과체중아동(비만도 120% 이상) 또는 저체중아동(비만도 85% 이하) ※본 지침 참고자료 p 중 가구특성 확인자료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체중도표] 참고
	체성분 검사 결과지	체성분 분석결과 표준범위 외의 자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의사소견서 또는 의료기록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의 어려움 예상(예방차원)에 대한 의사 소견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소견서(+자격증 사본)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Wee클래스·센터·스쿨에서 발급한 추천서	학교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Wee클래스·센터·스쿨에서 추천하는 아동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 추천서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검사결과지	효과성 검사(부산시 지침 참조)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뇌에 기가 짝짝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한)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	만 60세 이상인 자 또는 국가유공자(연령무관)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한)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제출자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제출, 연령무관)
	파킨스씨 병 관련한 증빙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파킨스씨병 환자(연령무관, 파킨스씨 병 관련한 증빙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의료급여 추천자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보건소 노인체력측정 검사결과지	보건소 노인체력측정 3개부분(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검사결과 평균 4등급 이상인 자 또는 표준범위 외의 자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신체건강 등에 의학적 이상소견이 있는자(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체성분검사결과지 또는 기초체력 검사결과지	체성분검사(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일반기관 모두 포함) 또는 기초체력검사 결과 표준범위 외의자 의료급여 추천자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증명서 포함), 의사진단서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가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추천서 및 소견서 : 아동의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
(발급처 직인 반드시 포함)
※ 추천자는 학교(기관)에 속한 아동에 한해 추천 가능
- 검사결과지 : 검사도구를 토대로 검사하여 분석한 결과지(아동이름, 작성기관명 명시, 직인 포함)
※ 절단점 기준은 부산시 지침에서 별도제시(서비스별 가구 특성 확인자료 참고 p.81~)